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외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현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외공무원의 전지휴양, 저지대요양, 전지의료검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공무 외 일시귀국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, 재외공관이 현지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외공무원의 복무 관리 등을 위하여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재외공무원 복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관련 법령과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관 업무분장 변경시 본부 보고 의무 삭제(제11조의3 개정)

나.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징계 관련 규정 정비(제13조의2 신설 등)

1) 소환·징계를 1개 조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2개 조항으로 분리

2) 주재관 징계 관련 사항은 「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」 규정 인용
다. 공관 공휴일을 “국경일”에서 “국경일 중 공휴일”로 개정(제19조 개정)

라.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을 “연 1회 20일”에서 “연 30일”로 완화(제21조 개정)

마. 전지휴양, 저지대요양, 전지의료검진 근거 마련(제22조의2 신설)

바.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

요청 근거 마련(제25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의3(업무분장)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환,”을 “소환 또는”으로, “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를 “조치(이하 “소환 등 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”을 각각 “에게 소환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소속 외무공무원”을 “재외공무원”으로, “또는 그 밖의”를 “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징계)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(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)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」 제16조에 따른다.

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경일 중 공휴일

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회 20일”을 “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1회 또는 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22조의2,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전지휴가 및 전지의료검진 등)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중에서 휴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20일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또는 저지대요양 및 7일 범위 내에서 의료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.

제2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재외공무원의 국외 근무 및 복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무
2.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, 제3국으로의 이동 등 근무지 변동의 허가
·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
3. 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인정·변경 및 관련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

사실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무

제26조(자료제공 요청 등) ①외교부장관은 제25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밖의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“관계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재외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의 일시귀국 또는 제3국 이동 여부를 확인을 위한 출입국에 관한 정보

②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2030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1조의3(업무분장)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제13조(소환 등) ①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<u>소환</u>, 그 밖의 적절한 <u>조치</u>를 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	<u>제11조의3(업무분장)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</u> 제13조(소환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소환 또는 ----- 조치(이하 “소환 등 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(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)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(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)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(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)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

② -----

---에게 소환 등-----

-----.

③ -----

---에게 소환 등-----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④ ----- 재외공무원---

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9조(근무시간 및 공휴일) ① (생략)

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경일

2. 3. (생략)

제21조(일시귀국) ① ~ ④ (생략)

⑤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

----- 등 -----

---.

제13조의2(징계)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(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)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」 제16조에 따른다.

제19조(근무시간 및 공휴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.

1. 국경일 중 공휴일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일시귀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-----

--- 30일 -----.

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

1. 2. (생략)

⑥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⑦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30일 -----

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전지휴가 및 전지의료
검진 등)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
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
지역 중에서 휴양비를 지급받을
수 있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
무원은 20일 범위 내에서 다른
지역에서의 휴양 또는 저지대요
양 및 7일 범위 내에서 의료검
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
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
한다.

제2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외
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
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
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
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

<신 설>

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재외공무원의 국외 근무 및 복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무

2.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, 제3국으로의 이동 등 근무지 변동의 허가·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

3. 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인정·변경 및 관련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사실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무

제26조(자료제공 요청 등) ①외교부장관은 제25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밖의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“관계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	<u>1. 재외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</u> <u>의 일시귀국 또는 제3국 이동</u> <u>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에</u> <u>관한 정보</u> <u>②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</u> <u>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</u> <u>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</u> <u>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인사기획관	
연 락 처	(02) 2100 - 7152